

대구대학교와 충성대체력단련장사업소 간의 산 · 학 교류 협약서

대구대학교와 충성대체력단련장 사업소(이하사업소)는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산 · 학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됨은 물론 상호발전에도 유익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사업소간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대구대학교와 사업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대구대학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인력을 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한다.
2. 대구대학교는 사업소의 비수기(동계:12.1.2월/하계 7.8월)기간동안 잔여티 및 취소티 해소에 적극 지원한다.
 - 상기 기간동안의 그린피는 정회원 및 프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이 경우 반드시 대구대학교 골프진흥센터의 회원증 제시를 통한 신분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3. 대구대학교와 사업소는 골프분야의 상호발전과 이해증진 및 사업소 홍보에 상호 협력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의 협약내용 실현을 위하여 필요시 양기관의 관계자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수 있다.

제4조(신의 성실의 원칙) 본 협약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며,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기관의 대표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제5조(협약서의 효력)

1.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2010. 12. 1

대구대학교골프산업진흥센터
센터장 최종필



충성대 체력단련장사업소
소장 안동기

